

<b>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b> <b>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b> <b>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b>	<h1 style="margin: 0;">보도자료</h1>	
	2025년 9월 23일(화)	광이경 노동안전보건국장 010-8997-908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유가족 · 대책위 입장

- 지난 1년 3개월간 아리셀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은 끊임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사상 최대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이자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심 선고에 대한 아리셀 대책위와 가족협의회 입장, 재판 직후 열린 기자회견 발언 전문입니다.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아리셀 대책위 · 가족협의회 입장

2024년 6월 24일,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에 대해 박순관, 박중언 부자에게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박순관과 변호인 김앤장은 이 참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전부 무죄 주장으로 일관해왔으나, 오늘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과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박순관과 김앤장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 모두 뒤집히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결과인 동시에, 이윤을 위한 자본의 폭주에 23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인 점에 비하면 형량은 여전히 미흡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1년 3개월을 투쟁해온 가족들과 고인의 넋을 위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1심 판결을 통해 아리셀 참사는 예고된 참사, 총체적 범죄인 점이 밝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화재발생 원인을 모두 알수 없더라도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점, △6월 22일 먼저 폭발한 전지와 같은 날 생산된 전지를 폐기하지 않은 점 △과건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소방안전교육, 리튬을 다루는 데 있어 특별 안전교육이 전무했다는 점 △비상구 위치나 대피 경로를 전혀 알수 없었다는 점 △위험성평가도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참사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 내내 김앤장이 공방을 벌였던 박순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여부도 재판부

는 단호히 인정했다. 특히, 박순관을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가 책임지지 않는 관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형과 관련하여, 이 참사는 구조적 문제라기 보다 피고인이 자처한 사고라는 점을 지적, 특히 파견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노동자들이 희생되었음을 중대하게 봐야한다며, 기존처럼 약한 형량이 내려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 요소로 크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막대한 자본을 들고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는 생계 등의 이유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들었다. 박순관은 그동안 피해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합의를 중용하며,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인간 이하의 악행을 벌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별합의와 소송 취하 협박으로 피해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재해 엄벌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신설과 관련해서도 오늘 판결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과 법원 모두 처벌에 소극적으로 최대 형량이 2년에 불과하며, 74%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참사를 막으려면 이제 솜방망이 처벌 관행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실질적 경영책임자 범위와 안전관리 의무의 기준을 정립하고 다시는 박순관 같은 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빠져나갈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리셀참사 피해자 대부분은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노동자였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험의 이주화와 위험의 외주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아리셀 참사를 끝까지 기억하며 투쟁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스물세명은 우리 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자에게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길일 것이다. 아리셀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박순관과 아리셀이 짓값을 제대로 치루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9월 23일

아리셀대책위 · 가족협의회

**[붙임]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유가족 ·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 ○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유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 일시, 장소 : 1심 선고 마친 후 수원지방법원 앞
- 발언 순서 (사회: 김도원 대책위 상황실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분부장)
  1. 아리셀중대재해참사 대책위 : 양한웅 공동대표
  2. 아리셀산재피해 가족협의회 : 김태운 공동대표, 최현주님, 이순희님(피해 유가족)
  3. 대책위 법률지원단 : 신하나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 양한웅 아리셀대책위 공동대표

재판부에서 유죄 인정했다. 그럼에도 형량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23명이 죽었다. 가족들이 불안감과 분노에 간밤에 잠도 못 자고 나왔다. 이주, 파견노동자 죽음이 사라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3심에도 최선을 다해서 형량 모자라는 부분은 싸워나가겠다.

### 김태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참사가 벌어지고 1년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중대재해 참사는 23명만 죽인 게 아닙니다. 두 자매를 잃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에스코넥 군납 비리와 관련되어 모든 책임을 전가 받은 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우리 유가족까지 너무나도 많은 목숨을 앗아간 참사입니다. 오늘 재판장에서 박순관 대표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여태껏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가 오늘 본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로 선고를 받을 때 비로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이 되도록 아파하고 거리에서 싸웠던 유가족들한테는 아직까지도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습니다. 사과는커녕 합의하면 사과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이런 막말을 했던 게 박순관입니다.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 책임자로서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형량 선고한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을 포함하여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린 재앙에 비하면 형량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죄도 사형을 구형하는데, 23명 아니 가족 100명을 죽인 대표에 대해서 15년은 너무 짧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더 이상은 이런 참사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한다는 부분에 저희는 마음이 그나마 놓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2심, 3심에서 더 쫓겨갈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합의했건 하지 않았건 모든 유가족들이 함께,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 계신 연대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현주(피해 유가족)

김병철 씨 배우자 최현주입니다. 중처법 이후 최고 형량이라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속된 말로 한 명당 1년도 안 됩니다. 이게 뭐니까? 저희들은 다 무너졌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박순

관이 얼굴을 감싸 안고 괴로워하기도 하더군요.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앞으로 2심 3심 얼마나 더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능멸할지 저희들 벌써부터 힘듭니다. 재판 과정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철저하게 김앤장은 유족들한테 죽은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했습니다. 그거 8개월 동안 당하고 또 당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2심 3심 또 새로운 거 갖고 들고 나오겠죠. 근데 저희들 계속 갈 겁니다. 기자님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재판 과정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난 거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겠다고 저한테 협박했습니다. 합의해 주면 도장 찍으면 사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면전에서 그랬습니다. 기자님들 참사 기사 쓰는 거 어렵더라도 저희들한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판사님도 말했습니다. 선례가 돼야 된다고 기자님들한테도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이순희(피해 유가족)**

엄정정 엄마입니다. 스물네 살짜리 딸이 갔습니다.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눈물 없이는 못 살겠고 가슴이 푹푹 막혀 웃음이 안 납니다. 30년이고 50년이고 받더라도 내 마음이 안 내려가겠는데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어린 딸을 데려갔는데 15년 형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형법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2심 3심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신하나 법률지원단장**

아리셀 법률지원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입니다. 오늘 박순관은 15년, 박중언 15년, 벌금 100만 원, 아리셀 벌금 8억 원 그리고 메이셀 3천만원, 한신다이아 3천만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사실상 전부 무죄의 주장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으나 오늘 판결에서 그 모든 주장들은 배척되었습니다.

우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재판부는 명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 단락은 제조상의 결함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판단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 아리셀에서는 과거 4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네 번의 사고는 모두 다른 원인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알 수 없더라도 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육군 본부나 그리고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서 화재 가능성에 대한 공문을 받은 것들도 예견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 했습니다. 또한 동종 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과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관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에이징 기간 중에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해액이 주입되고 나서도 바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 폭발이 되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의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 했습니다. 또한 이 산업과 최신 정보 특히 안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생산 업체 그 자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 업체 는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원인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 조치 의무를 취해야 된

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그리고 또 보관상의 주의 의무와 관련하여 이번에 폭발한 전지들이 6월 22일 사고가 난 전지들과 같은 날 만들어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셀에서는 손 발열 검사 등으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 공정 사이에 발생하는 발열이나 화재, 폭발에 대해서 전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 감지기 등의 안전 조치 의무를 취했어야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그리고 6월 22일 자로 만들어낸 전지들을 어떻게 보관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생산 날짜별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후속 공정을 취하거나 또 폭발의 전조 증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전지를 분리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안전 보건 교육과 관련해서도 정규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였으나 파견직에게는 안전 보건 교육 및 소방안전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결국 사상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채용 시 안전 보건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특별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리튬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습니다.파견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지 폭발할 당시 대비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리고 비상구에 대한 위치나 대피 경로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때문에 23명의 사상자가 났음을 재판부는 인정 했습니다.또한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 되었습니다.비상구와 관련해서도 주 출입구와 대각선 쪽으로의 문이 열리도록 비상구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박순관은 계속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지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중언이 어느 정도 사업상의 경영 권한을 위임받은 점은 인정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박중언이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이 부분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 책임자로 인정 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에서 이렇게 경영의 일부분을 넘기고 중대 재해가 발생 했을 때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이사인 박순관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여전히 행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 책임자의 죄책을 진다고 판시 했습니다.

특히 양형과 관련해서 생명의 존중, 생명의 절대성,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우리 사회의 가치라는 점을 확인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중소기업 업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자처한 사고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또한 파견노동자, 우리 사회 약한 고리인 사람들이 사망한 점에 대해서 중하게 봐야 된다고 했고, 6월 20일 사고가 난 전지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봤을 때, 1192개의 전지를 버리는 것은 그렇게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판시했습니다.또한 재판부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지를 등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위험해 보였다고 하면서 만약에 경영자들도 이곳에 자신의 가족들이 일했다면 매우 불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경영하면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며 법 위반이 중대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계속 약한 형량이 내려져 왔으며, 이런 부분을 과실범에 준하여 계속 약하게 판단 하였을 때 계속 우리 사회에서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 부분,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대한 강조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 해야 될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의 요소로 크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자본가들은 막대한 자본을 들고 피해자들은 민형사상의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그리고 또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했을 때 회사는 안전에 관심을 귀 기울이지 않고 사고가 나면 합의금을 쥐어주고 사고를 무마시키는 악순환,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섰음에도 전혀 산업재해 감소와는 관련성이 생기지 않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박순관 박중언의 형량이 결정된 것이고, 사실 아무리 중한 형량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23명이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미 23명의 우주는 사라 스러지만 우리 사회가 이 사고를 반성하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책임자들에게 충분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량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시 내용이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곱씹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민사 소송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률지원단은 끝까지 유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